

의안번호	2211255
의 퇴 인	남인순의원
회 답 일	2025.07.29.
추계번호	25C3624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 (준수사항)	○ 국가는 제2항 ¹⁾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6조 (준수사항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준수사항(안 제36조)

- 개정안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가 사회복지사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
 - －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38조의제2항제6호는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

1)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제36조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인 외에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상담 및 지원, 지역사회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함

1. 종합병원

2.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

환자의 갱생·재활과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서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규정함

-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합병원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하고,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- 사회복지사 배치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수, 국비보조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어려움
 -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배치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와 사회복지사의 수 및 비용지원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
 - 참고로, 2025년 상반기 기준 의료기관 당 평균 사회복지사 수는 상급 종합병원 7.4명, 종합병원 2.4명, 병원급 의료기관 1.2명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며,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변동될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 의료기관 수와 배치 인원은 예측하기 어려움
 - 또한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보조한 사례가 없으므로 국가 지원 범위를 준용할 만한 사례가 부재함

[표 1] 2024년 기준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수 및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
(단위: 개소, 명)

구분	상급 종합병원	종합병원	병원급 의료기관	합계
의료기관 수	47	330	2,569	2,946
사회복지사 수	347	778	3,122	4,247
기관 당 평균 사회복지사 수	7.4	2.4	1.2	1.4

주: 의료기관 수는 2025년 3월 말 기준이며, 사회복지사 수는 2025년 5월 말 기준임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